|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법**  (의견수렴안)  제1장 총칙  제2장 외국투자자 및 외국투자  제3장 진입허가 관리  제4장 국가안전심사  제5장 정보 보고  제6장 투자 촉진  제7장 투자 보호  제8장 민원 조율·처리  제9장 감독과 검사  제10장 법률책임  제11장 부칙    **제1장 총칙**  **第一条**【입법목적】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국투자를 촉진 및 규율하며 외국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안전 및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한다.  **第二条**【적용범위】  외국투자자의 중국 경내 투자는 이 법을 적용받는다..  **第三条**【투자보호】  국가는 법에 따라 외국투자자, 외국투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第四条**【국내법 준수】  외국투자자, 외국투자기업은 중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가안전과 사회공공이익을 해쳐서는 아니된다.  외국투자, 외국투자기업은 투자 및 경영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사회공중도덕, 상업도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고 사회의 감독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第五条**【외자 관리제도】  국가는 단일화된 외국투자 관리제도를 시행한다.  **第六条**【내국민대우】  외국투자자가 중국 경내에서 투자 시 내국민대우를 받는다. 단, 이 법 제23조 【목록 제정절차】에 근거하여 제정한 외국투자 특별 관리조치 목록(이하 "특별 관리조치 목록"으로 약칭)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第七条**【투자촉진】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어울리는 외국투자 촉진 정책을 제정 및 실시하고 투자의 편리화를 촉진하며 건전하고 통일적이며 개방적이고 경쟁질서가 양호한 시장 시스템을 구축한다.  **第八条**【공개와 투명의 원칙】  국가는 외국투자자의 중국 경내 투자를 관리함에 있어 공개와 투명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第九条**【외국투자 주관부서】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이 법에 따라 전국의 외국투자 관리 및 촉진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 급 인민정부의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법정 권한에 따라 본 부서 관할구역 내의 외국투자 관리 및 촉진 업무를 책임진다.  **第十条**【투자조약】  국가는 평등·호혜의 원칙에 근거하여 기타 국가와 지역간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활성화 화며 다국간·양국간·지역간 투자조약, 공약, 협정을 체결한다.  **제2장 외국투자자 및 외국투자**  **第十一条**【외국투자자】  이 법에서 외국투자자라 함은 중국 경내에 투자하는 다음 각 호의 주체를 지칭한다.  (1) 중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연인;  (2)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업;  (3)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의 정부 및 그 소속부서 또는 소속기관;  (4) 국제조직.  전 항에서 규정한 주체가 통제하는 경내기업은 외국투자자로 간주한다.  **第十二条**【중국투자자】  이 법에서 중국투자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주체를 지칭한다.  (1) 중국 국적을 보유한 자연인;  (2) 중국 정부 및 그 소속부서 또는 소속기관;  (3) 위의 제(1)호, 제(2)호에 정한 주체의 통제를 받는 경내기업.  **第十三条**【경내기업】  이 법에서 경내기업이라 함은 중국 법률에 의거하여 중국 경내에 설립된 기업을 지칭한다.  **第十四条**【외국투자기업】  이 법에서 외국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투자한 중국 법률에 의거하여 중국 경내에 설립된 기업을 지칭한다.  **第十五条**【외국투자】  이 법에서 외국투자라 함은 외국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투자활동을 지칭한다.  (1) 경내기업 설립;  (2) 경내기업의 주식, 지분, 재산지분, 표결권 또는 기타 유사한 권익 취득;  (3) 그가 위의 제(2)호에 열거된 권익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게 대출기간 1년 이상의 융자금 제공;  (4) 경내 또는 중국에 속하는 기타 자원관할 영역의 자연자원 탐사·개발 특허권을 취득하거나 기초시설 건설·운영 특허권 취득;  (5) 경내의 토지사용권, 건물소유권 등 부동산 권리 취득;  (6) 계약, 신탁 등 방식으로 경내기업을 통제하거나 경내기업의 권익 보유.  경외거래로 인해 경내기업에 대한 실제통제권이 외국투자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외국투자의 중국 경내 투자로 간주한다.  **第十六条**【부동산 권리】  외국투자자가 중국 경내의 토지사용권, 건물소유권 등 부동산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이 법 제4장 【국가안전심사】, 제5장 【정보 보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第十七条**【비영리조직】  외국투자자가 중국 경내에 비영리조직을 설립하거나 비영리조직의 권익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이 법 제4장 【국가안전심사】, 제5장 【정보 보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第十八条**【통제】  이 법에서 통제라 함은 한 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조건의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는 경우를 지칭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기업의 주식, 지분, 재산지분, 표결권 또는 기타 유사한 권익을 50%이상 보유.  (2)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당해 기업의 주식, 지분, 재산지분, 표결권 또는 기타 유사한 권익이 50% 미만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당해 기업의 이사회 또는 유사한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에 대한 직접 임명권 또는 간접적 임명권 보유;  2. 그가 추천한 후보자가 당해 기업의 이사회 또는 유사한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 차지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 보유;  3. 주주회, 주주대회 또는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결의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표결권 보유;  (3) 계약, 신탁 등 방식으로 당해 기업의 경영, 재무, 인사 또는 기술 등에 대해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第十九条**【실제통제인】  이 법에서 실제통제인이라 함은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투자기업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통제하는 자연인 또는 기업을 지칭한다.  **제3장 진입허가 관리**  **제1절 일반 규정**  **第二十条**【외자 진입허가 제도】  국가는 단일화된 외자진입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외국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분야는 특별 관리조치 목록에 의거하여 관리를 실시한다.  **第二十一条**【외자 진입허가 주관부서】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외국투자에 대한 진입허가 관리를 실시한다.  **第二十二条**【특별 관리조치 목록】  외국투자자 및 그 투자에 대해 중국투자자 및 그 투자가 누리는 대우보다 낮은 대우를 제공하거나 기타 제한을 가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특별 관리조치 목록에 추가해야 한다.  **第二十三条【**목록 제정 절차】  특별 관리조치 목록은 국무원이 통일적으로 제정 및 공표한다.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국가가 체결한 다국간·양국간·지역간 투자조약, 공약, 협정 및 외국투자 관련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에 근거하여 특별 관리조치 목록의 제정 또는 조정을 제안하고 국무원 심의에 상정한다.  **第二十四条**【목록 분류】  특별 관리조치 목록은 실시 금지 목록과 실시 제한 목록으로 구분한다.  실시 제한 목록에 외국투자의 제한조건을 상세히 열거해야 한다.  **第二十五条【**실시 금지 목록】  실시 금지 목록에 열거되어 있는 분야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투자를 금지한다.  외국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경내기업의 주식, 지분, 재산지분 또는 기타 권익, 표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경내기업의 실시 금지 목록에 열거되어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단, 국무원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第二十六条**【실시 제한 목록】  실시 제한 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국무원이 규정한 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투자;  (2) 외국투자 실시를 제한하는 분야.  외국투자가 실시 제한 목록에 열거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실시 제한 목록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외국투자 주관부서에 외국투자 진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실시 제한 목록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진입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제2절 진입허가**  **第二十七条**【외자 진입허가 신청】  이 법 제26조 【실시 제한 목록】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투자를 실시하는 경우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에 진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법 제26조 【실시 제한 목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투자를 실시하는 경우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투자주관부서에 진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구체적인 허가권한의 구분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第二十八条**【투자금액의 누적계산】  외국투자자가 2년 내에 동일 투자사항에 대해 수차례의 투자를 실시하고 그 투자 누계 금액이 실시 제한 목록에서 정한 기준에 도달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진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第二十九条**【융자금의 투자금 산입】  외국투자자가 그가 권익을 보유하고 있는 경내기업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출기간 1년 이상의 융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융자금액을 투자금액 계산에 산입시켜야 한다.  **第三十条**【진입허가 신청서류】  외국투자자가 이 법 제27조 【외자 진입허가 신청】에 의거하여 외국투자 주관부서에 진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신청서.  1. 외국투자자 및 그 실제통제인의 상황;  2. 투자금액, 투자분야, 투자지역, 투자방식, 출자비율 및 출자방식 등 외국투자 의 기본정보;  3. 특별 관리조치 요구사항 부합성에 대한 설명;  4. 외국투자가 에너지자원, 기술혁신, 취업, 환경보호, 안전생산, 지역발전, 자본항목 관리,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  5. 국가안전심사 및 반독점 심사 촉발 가능성에 대한 설명;  6. 전치(前置)적 산업허가의 신청·획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산업 주관부서에서 발급한 허가증명서류 제출;  7. 외국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변경과 연관된 경우 당해 외국투자기업의 조직형태, 지배구조 등 정보 제출;  8. 통보방식과 송달방식.  (2) 신청서의 내용과 관련된 문서와 증명서류;  (3) 외국투자자 및 그 실제통제인의 진술, 성명과 신청서류의 진실설, 완전성에 대한 약속.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외국투자자에게 전 항에 규정한 내용과 관련된 보충자료의 제출을요구할 수 있다.  **第三十一条**【접수】  신청서류가 완비되었고 법정 형식에 부합되는 경우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진입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인에서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청서류가 완비되지 못하였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바로 또는 5일(근무일 기준) 내에 보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신청인에게 일괄 고지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고지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류 수취일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第三十二条【**심사요소】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면에서 외국투자에 대한 진입허가 심사를 진행한다.  (1) 국가안전에 미치는 영향;  (2) 특별 관리조치 목록에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  (3) 에너지자원, 기술혁신, 취업, 환경보호, 안전생산, 지역발전, 자본항목 관리, 경쟁, 사회공공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4) 산업발전에 대한 실제 영향력과 통제력;  (5) 국제조약상의 의무;  (6) 외국투자자 및 그 실제통제인의 상황;  (7)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요소.  **第三十三条**【진입허가와 산업허가의 관계】  외국투자가 전치(前置)적 산업허가 신청·획득이 필요한 분야와 연관된 경우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심사결정문에서 산업허가 획득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외국투자가 비전치(非前置)적 산업허가 신청·획득이 필요한 분야와 연관된 경우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심사 과정에서 관련 산업 주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산업 주관부서는 심사의견서를 발급하고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심사결정문에서 산업 주관부서의 심사의견에 대해 설명한다.  **第三十四条**【진입허가와 안전심사와의 연결】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진입허가 심사 진행 시 외국투자가 국가안전을 해하거나 국가안전을 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진입허가 심사절차를 일시 중단하고 신청인에게 국가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진입허가 심사를 담당하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관련 상황을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신청인이 진입허가 신청을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투자자는 이 법 제4장 【국가안전심사】에 따라 국가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第三十五条**【심사기한】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진입허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근무일 기준)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상황이 복잡한 경우 30일(근무일 기준) 연장할 수 있다.  이 법 제34조 【진입허가와 안전심사와의 연결】에 규정한 상황이 발생하여 국가안전심사 절차가 개시된 경우 국가안전심사 기한은 전 항의 심사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第三十六条**【심사결정】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외국투자사항에 대해 승인, 조건부 승인 또는 불승인의 서면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조건부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第三十七条**【부가조건의 유형】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심사결정과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1) 자산 또는 업무의 분리;  (2) 지분비율 제한;  (3) 경영기한에 대한 요구;  (4) 투자지역 제한;  (5) 현지 근로자 고용비율 또는 고용인원수에 대한 요구;  (6)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조건.  외국투자 주관부서가 이상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을 부가하는 경우 심사결정서에 명확히 열거해야 한다.  **第三十八条**【의견 수렴】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진입허가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서, 지방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第三十九条**【사회대중의 의견 수렴】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진입허가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사항이 사회공공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논증회 소집, 공개청문회 개최 등의 방식을 통해 사회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第四十条**【해명의 기회】  외국투자 주관부서가 진입허가 심사를 통해 조건부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경우 외국투자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第四十一条**【승인 결정의 유효기간】  외국투자자가 승인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 내에 투자행위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승인 결정을 내린 외국투자 주관부서에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외국투자 주관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국투자자는 진입허가 신청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第四十二条**【수속 처리】  이 법에 따라 진입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외국투자의 경우 외국투자자는 진입허가를 획득한 후 등기, 외환, 세무 등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진입허가 절차가 필요 없는 외국투자의 경우 외국투자자는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등기, 외환, 세무 등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第四十三条**【허가 결정의 공개】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외국투자 진입허가 결정을 사회에 공표해야 하고 법에 따라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第四十四条**【부가조건 준수상황 보고】  이 법에 따라 외국투자에 대한 조건부 진입허가를 획득한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투자기업은 이 법 제5장 【정보 보고】 제4절 【정기보고】에 따라 연도고보서 제출 시 직전년도의 경영활동에서 부가조건을 준수한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第四十五条**【실제통제 상황하의 내자시(視)】  이 법 제11조 【외국투자자】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외국투자자가 중국투자자의 통제를 받고 그가 중국 경내에서 실시 제한 목록 상의 투자를 실시하는 경우 진입허가 신청 시 서면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그의 투자를 중국투자자의 투자로 간주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진입허가 심사 진행 시 외국투자자가 전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한 신청에 대해 심사하고 중국투자자의 투자로 간주 여부에 대한 심사의견을 도출해야 하며 진입허가 결정문에서 설명해야 한다.  **第四十六条**【외자 진입허가 심사 지침】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외구투자 진입허가 심사 지침을 작성 및 공표해야 한다.  **第四十七条**【자문】  외국투자자와 그 이해관계자는 이 법 제27조 【외자 진입허가 신청】에 규정한 외국투자 주관부서에 외국투자 진입허가의 범위 및 절차에 대한 자문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자문신청을 접수한 후 10일(근무일 기준) 내에 답변해야 한다.    **제4장 국가안전심사**  **第四十八条**【안전심사제도】  국가안전을 확보하고 외국투자를 규율 및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는 통일적인 외국투자 국가안전심사제도를 수립하고 국가안전을 해하거나 국가안전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투자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다.  **第四十九条**【안전심사 연석회의】  국무원은 외국투자 국가안전심사부서간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로 약칭)를 구성하여 외국투자 국가안전심사 직책을 수행하도록 한다.  국무원 발전개혁부서와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공동으로 연석회의 소집을 담당하고 외국투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외국투자 국가안전심사를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第五十条**【투자자의 안전심사 신청】  외국투자가 국가안전을 해하거나 국가안전을 해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외국투자자는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에 국가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第五十一条**【안전심사 신청서류】  외국투자 주관부서에 국가안전심사를 신청하는 외국투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신청서.  1. 외국투자자 및 그 실제통제인, 고급관리인원의 상황;  2. 투자금액, 투자분야, 투자지역, 투자방식, 출자비율 및 출자방식,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 외국투자의 기본정보;  3. 외국투자가 국가안전을 해하거나 국가안전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  4. 외국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변경과 연관된 경우 당해 외국투자기업의 조직형태, 지배구조 등 정보 제출;  5. 통보방식과 송달방식.  (2) 신청서의 내용과 관련된 문서와 증명서류;  (3) 외국투자자 및 그 실제통제인의 진술, 성명과 신청서류의 진실설, 완전성에 대한 약속.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국가안전심사 과정에서 외국투자자와 기타 당사자에게 관련된 보충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第五十二条**【예약상담】  외국투자자는 국무원 외국투자주관부서에 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하기에 앞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예약상담을 신청하여 관련 상황에 대해 미리 교류 할 수 있다.  **第五十三条** 【안전심사 진행 여부 확정】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제51조 【안전심사 신청서류】에 규정한 신청서류를 수취한 후 15일(근무일 기준) 내에 해당 외국투자사항에 대한 국가안전심사 필요 여부를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국가안전심사가 필요한 경우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신청인에게 고지한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연석회의에 심의를 제청한다.  **第五十四条** 【투자자의 안점심사 신청 취하】  외국투자자는 국가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한 후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의 동의 없이 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第五十五条** 【직권에 따른 안점심사 절차 개시】  연석회의는 직권에 따라 국가안전을 해하거나 국가안전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투자에 대한 국가안전심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관련부서, 산업협회, 동종업계 기업, 상하위 업체 및 외국투자자를 제외한 기타 당사자가 어느 외국투자에 대해 국가안전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에 국가안전심사 실시를 제안할 수 있다. 연석회의는 국가안전심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 실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연석회의가 국가안전심사 절차 개시를 결정한 경우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서면으로 외국투자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第五十六条** 【안전심사 재실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연석회의는 이 법 제55조 【직권에 따른 안점심사 절차 개시】에 근거하여 이미 심사를 마친 외국투자에 대해 국가안전심사를 재실시 할 수 있다.  (1) 외국투자자 또는 기타 당사자가 심사 과정에서 관련 상황을 은폐하고 조작된 자료를 제공하였거나 허위진술을 한 경우;  (2) 외국투자자 또는 기타 당사자가 투자를 실시함에 있어 심사결정에 부가된 제한적 조건을 위반한 경우.  **第五十七条** 【안전심사 요소】  외국투자에 대한 국가안전심사 진행 시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국방에 필요한 국내 제품 생산능력, 국내 서비스 제공능력 및 관련 설비·시설에 미치는 영향, 중점·민감 국방시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 국방안전에 미치는 영향;  (2) 국가안전과 연관된 핵심기술 연구개발능력에 미치는 영향;  (3) 국가안전 분야와 연관된 우리 나라의 기술 선두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  (4) 수출입 규제를 받는 이중용도 품목·기술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  (5) 우리 나라의 핵심 기초시설과 핵심기술에 미치는 영향;  (6) 우리 나라의 정보 및 네트워크 보안에 미치는 영향;  (7) 우리 나라의 에너지, 식량 및 기타 핵심자원에 대한 장기 수요에 미치는 영향;  (8) 외국투자사항이 외국정부의 통제를 받는지 여부;  (9) 국가경제 운행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10) 사회공공이익과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  (11) 연석회의가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기타 요소.  **第五十八条** 【안전심사 결정의 유형】  국무원 또는 연석회의는 국가안전심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외국투자가 국가안전을 해치지 아니할 경우 통과시킨다;  (2) 외국투자가 국가안전을 해하거나 국가안전을 해할 가능성이 있으나 제한적 조건 부가를 통해 위험요소 제거가 가능한 경우 조건부 통과시킨다.  (3) 외국투자가 국가안전을 해하거나 국가안전을 해할 가능성이 있고 위험요소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통과시키지 아니한다.  **第五十九条** 【안전심사 협조의무】  외국투자자 및 기타 당사자는 연석회의의 국가안전심사에 협조해야 하고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관련 질문에 답변하거나 조사에 응해야 한다.  **第六十条** 【안전심사 단계】  연석회의가 실시하는 국가안전심사는 일반심사 단계와 특별심사 단계로 구분한다.  **第六十一条** 【일반심사기한】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가 이 법 제53조 【안전심사 진행 여부 확정】에 근거하여 연석회의에 심사를 제청한 날 또는 연석회의가 이 법 제55조 【직권에 따른 안전심사 절차 개시】에 근거하여 국가안전심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30일(근무일 기준) 내에 일반심사를 마쳐야 한다.  **第六十二条** 【일반심사의견】  일반심사를 통해 외국투자가 국가안전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석회의는 심사의견을 형성하여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에 서면통보 해야 하며; 외국투자가 국가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심사 실시를 결정하고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에 서면통보 해야 한다.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연석회의의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신청인과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통보 해야 한다.  **第六十三条** 【특별심사기한】  이 법 제62조 【일반심사의견】의 규정에 근거하여 특별심사 절차가 개시된 날로부터 60일(근무일 기준) 내에 특별심사를 마쳐야 한다.  연석회의는 특별심사 절차가 개시된 후 외국투자에 대한 안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의견에 결부시켜 심사를 실시한다.  **第六十四条** 【특별심사의견】  일반심사를 통해 외국투자가 국가안전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석회의는 서면심사의견을 제출하고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에 서면통보 해야 하며;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연석회의의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신청인과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통보 해야 한다.  특별심사 과정에서 외국투자가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국가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석회의는 서면심사의견을 국무원에 보고하여 국무원의 결정을 요청한다. 국무원에서 통과된 경우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가 신청인과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통보 하고; 부결했을 경우 국무원이 부결결정을 내린다.  **第六十五条** 【제한적 조건 부가】  외국투자가 국가안전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신청인은 심사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외국투자에 대한 제한적 조건 부가를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에 제안할 수 있다.  연석회의는 해당 제안사항의 유효성과 실행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연석회의는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관련 당사자와 투자의 필요한 조정을 통해 국가안전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제거를 포함한 제한적 조건 부가를 약정할 수 있다.  **第六十六条** 【조건부 통과】  평가 및 당사자와의 합의 달성을 거쳐 연석회의는 조건부 통과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조건부 통과 결정을 신청인과 관련 당사자에게 고지하도록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에 서면통보한다.  **第六十七条** 【부가조건 집행에 대한 감독】  외국투자가 이 법에 따라 제한적 조건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가안전심사를 통과한 경우 외국투자자가, 외국투자기업은 이 법 제5장 【정보 보고】 제4절 【정기보고】에 따라 연도보고서 제출 시 직전년도의 제한적 조건 준수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제한적 조건 집행 상황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관련 당사자의 제한적 조건 위반행위가 국가안전을 해하였거나 국가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이 법 제56조 【안전심사 재실시】의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심사 재실시를 제청할 수 있다.  **第六十八条** 【안전심사 지침】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외국투자 국가안전심사 지침을 작성 및 공표해야 한다.  **第六十九条** 【안전심사 연도보고】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외국투자 국가안전심사 연도고보서를 작성 및 공표해야 한다.  **第七十条** 【안전심사 임시조치】  국가안전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국가안전 수호에 필요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第七十一条** 【안전심사 강제조치】  국가안전심사 결과 외국투자가 국가안전에 대해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거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당사자에게 외국투자 실시 금지 또는 중지 명령을 내리거나 해당 지분, 자산의 양도 또는 기타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여 외국투자가 국가안전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피해야 한다.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외국투자가 국가안전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피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第七十二条** 【법률책임 부담】  외국투자자가 국가안전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실시한 투자에 대해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가 이 법 제70조 【안전심사 임시조치】, 제71조 【안전심사 강제조치】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 이미 실시한 투자에 발생한 손실은 외국투자자가 부담한다.  **第七十三条** 【행정재심사 및 행정소송의 면제】  이 장에 근거하여 내려진 국가안전심사결정에 대해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第七十四条** 【금융분야 외국투자에 대한 안전심사제도】  외국투자자의 금융분야 투자에 대한 국가안전심사제도는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5장 정보 보고**  **제1절 일반 규정**  **第七十五条** 【정보보고 제도】  국가는 외국투자 정보보고제도를 구축하고 보완하여 전국의 외국투자 상황 및 외국투자기업 운영상황을 제때에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외국투자 법률·법규 및 정책의 제정과 보완, 외국투자의 촉진과 유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第七十六条** 【정보보고 관리】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외국투자정보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보고 관리제도 제정하며 전국 외국투자정보의 수집, 분석, 공표 및 대외교류 업무를 담당한다.  **第七十七条** 【외국투자 분석보고】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외국투자의 산업분석, 경제적 효익, 사회영향 및 정책제안 등 내용을 포함한 연간외국투자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한다.  **第七十八条** 【정보보고의 주체】  외국투자자, 외국투자기업은 이 법에 따라 정보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第七十九条** 【정보보고의 경로】  외국투자자, 외국투자기업은 외국투자정보 보고 시스템을 통해 외국투자 주관부서에 정보를 보고한다.  **第八十条** 【성실한 보고】  외국투자자, 외국투자기업은 이 법에 따라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기재, 유도적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第八十一条** 【포트폴리오투자 보고】  외국투자자가 경내 상장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증권법> 및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 공시 및 기타 법정(法定)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경내 상장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매입하거나 10% 미만의 주식을 매입하지만 경내 상장회사의 통제권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10% 미만의 경내 상장회사 주식을 매입하고 경내 상장회사의 통제권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제93조 【연도보고내용 - 포트폴리오투자】에 따라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第八十二条** 【보고정보의 공시】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외국투자정보 보고 시스템을 통해 외국투자자, 외국투자기업이 제공한 정보를 사회에 공시할 수 있다.  **第八十三条** 【보고정보의 조회】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외국투자 주관부서에 외국투자정보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第八十四条** 【정보공시의 예외】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투자자, 외국투자기업의 상업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연관된 외국투자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절 외국투자사항 보고**  **第八十五条** 【정보 보고 시간】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투자기업은 투자 실시 전 또는 투자 실시일로부터 30일 내에 이 절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법규에 외국투자 실시에 대한 등기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등기 완료일을 투자 실시일로 하며; 등기 요구가 없을 경우 투자거래 완성일을 투자 실시일로 한다.  **第八十六条** 【실제투자 변화 보고】  외국투자자가 투자 실시 전에 정보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실제 투자상황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투자 실시일로부터 30일 내에 변화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第八十七条** 【정보 고보 내용】  외국투자자의 중국 경내 투자가 외국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변경과 연관된 경우 외국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1) 명칭, 주소지, 등록지, 실제통제인, 조직형태, 주요 경영업무, 연락 담당자 및 연락처를 포함한 외국투자자의 기본정보;  (2) 투자금액, 투자원천지, 투자분야, 투자지역, 투자시간, 투자방식, 출자비율과 출자방식, 관련 행정허가 또는 비안(備案) 획득 상황을 포함한 외국투자의 기본정보;  (3) 명칭, 주소지, 조직기구코드, 등록지, 지분구조, 투자금액, 등록자본, 실제통제인, 조직형태, 경영범위, 연락 담당자 및 연락처를 포함한 외국투자기업의 기본정보;  외국투자자의 중국 경내 투자가 외국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변경과 연관되지 아니한 경우 전 항의 제(1)호와 제(2)호 내용만 보고한다.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투자기업에 위 두 항에 규정한 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第八十八条** 【진입허가 상황 보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진입허가를 획득해야 하는 외국투자의 경우 진입허가를 획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법 제87조 【정보 보고 내용】에 따라 관련 정보를 보고하는 외에 진입허가 획득 관련 상황도 보고해야 한다.  **제3절 외국투자사항 변경 보고**  **第八十九条** 【변경보고 내용】  외국투자사항이 변경된 경우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투자기업은 변경 발생 후 30일 내에 변경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 항에서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외국투자자의 명칭, 주소지, 등록지, 실제통제인, 조직형태, 주요 경영업무, 연락 담당자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2) 합병, 분할, 파산, 해산, 철폐, 취소, 말소 또는 국적 변경, 사망으로 인해 외국투자자의 신분이 변경된 경우;  (3) 외국투자의 투자금액, 투자원천지, 투자분야, 투자지역, 투자시간, 투자방식, 출자비율과 출자방식, 관련 행정허가 또는 비안(備案) 획득 상황이 변경된 경우;  (4) 외국투자 권익을 양도, 임대하였거나 외국투자 권익에 대해 저당권 또는 질권을 설정한 경우;  (5) 외국투자기업의 명칭, 주소지, 조직기구코드, 등록지, 지분구조, 투자금액, 등록자본, 실제통제인, 조직형태, 경영범위, 연락 담당자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6) 합병, 분할, 파산, 해산, 철폐, 취소, 말소로 인해 외국투자기업의 신분이 변경된 경우;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투자기업에 전 항에 규정한 정보와 관련된 보충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第九十条** 【별도의 진입허가 촉발】  이 법 제89조 【변경보고 내용】에 규정한 변경 상황의 발생으로 별도의 외국투자 진입허가가 촉발되는 경우 외국투자자는 이 법에 따라 진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第九十一条** 【진입허가 조건의 위반】  이 법 제89조【변경보고 내용】에 규정한 변경상황의 발생으로 외국투자 진입허가 부가조건에 대한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경우 외국투자자는 변경보고서 제출 시 이에 대해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진입허가를 승인한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경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보완조치를 취하거나 이 법에 따라 진입허가를 다시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절 정기보고**  **第九十二条** 【연도보고내용】  외국투자자의 중국 경내 투자가 외국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변경과 연관된 경우 외국투자기업은 매년 4월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직전년도 정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명칭, 주소지, 등록지, 실제통제인, 조직형태, 주요 경영업무, 연락 담당자 및 연락처를 포함한 외국투자자의 기본정보;  (2) 투자금액, 투자원천지, 투자분야, 투자지역, 투자시간, 투자방식, 출자비율과 출자방식, 관련 행정허가 또는 비안(備案) 획득 상황을 포함한 외국투자의 기본정보;  (3) 명칭, 주소지, 조직기구코드, 등록지, 지분구조, 투자금액, 등록자본, 실제통제인, 조직형태, 경영범위, 연락 담당자 및 연락처를 포함한 외국투자기업의 기본정보;  (4) 산업분야, 주요 제품 또는 서비스, 수출입, 고용상황, 세금납부, 연구개발 등 직전년도 외국투자기업의 경영상황 정보;  (5) 자산, 부채, 소유자권익, 수입, 비용, 이윤 등을 포함한 직전년도 외국투자기업의 재무회계정보;  (6) 직전년도에 외국투자기업이 외국투자자 및 그 관계자와 진행한 투자 및 수출입무역 상황 등;  (7) 직전년도 중국 경내외에서 발생한 외국투자기업과 연관된 중대한 소송, 행정재심사, 행정·형사처벌 및 이 법 제8장 【민원 조율·처리】에 따라 제기된 민원 등 관련 상황;  외국투자자의 중국 경내 투자가 외국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변경과 연관되지 아니한 경우 매년 4월 30일 전에 연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도보고서에는 전 항 제(1)호, 제(2)호에 규정한 정보와 직전년도 투자자산의 거래 상황, 투자수익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투자기업에 위의 제1항, 제2항에 규정한 정보와 관련된 보충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第九十三条** 【연도보고내용 - 포트폴리오투자】  외국투자자가 10% 미만의 경내 상장회사 주식을 매입하고 경내 상장회사의 통제권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경내 상장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외국투자자는 매년 4월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연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명칭, 주소지, 등록지, 실제통제인, 조직형태, 주요 경영업무, 연락 담당자 및 연락처를 포함한 외국투자자의 기본정보;  (2) 상장회사의 명칭, 주식거래고유번호, 경영범위;  (3) 직전년도 주식거래 상황.  **第九十四条** 【중점 외국투자기업의 분기보고】  외국투자자가 통제하는 외국투자기업의 자산총액,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이 100억위안을 초과하거나 그 자회사 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내에 분기 경영정보와 재무회계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第九十五条** 【통합보고】  외국투자기업은 그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통제한 경내기업의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일괄보고해야 한다.  **제5절 외국투자 통계**  **第九十六条** 【외국투자 통계】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통계법> 및 국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외국투자 통계조사제도 및 통계표준을 수립 및 보완하고 전국 범위내의 외국투자 통계조사 업무를 계획하고 조율하며 외국투자자, 외국투자기업의 정보보고내용과 결부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통계 데이터를 발표하며 기록문서 관리, 데이터 정보의 공유 및 대외교류 업무를 확실하게 수행한다.  **第九十七条** 【통계 보고】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외국투자자, 외국투자기업이 제출한 정보보고서의 관련 내용을 취합, 귀납하여 외국투자 통계보고서를 작성 및 발표한다.  **第九十八条** 【정보제공의무】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외국투자 통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에 따라 관련 지방, 부서에 관련 정보 및 데이터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지방, 부서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第九十九条** 【통계 데이터 공유】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관련 부서에 외국투자 통계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제6장 투자 촉진**  **第一百条** 【투자 촉진 제도】  국가는 외국투자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외국투자 촉진제도를 구축 및 보완하여 우리 나라의 국민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부응하는 외국투자를 유도하고 외국투자 이용의 질과 수준을 제고한다.  **第一百零一条** 【투자 촉진 정책】  국가는 법에 따라 재정, 조세, 금융, 인재, 산업, 교육, 연구개발 등과 관련한 정책조치를 제정하여 외국투자를 촉진한다.  **第一百零二条** 【산업·지역 정책】  국가는 국내 경제·사회 발전 및 산업이전 형세의 수요에 근거하여 외국투자자가 국가에서 투자를 격려하는 산업분야 또는 특수 경제지역, 민족자치지역 및 후진경제지역에 대해 투자하고 선진적인 제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취급하는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도록 촉진한다.  **第一百零三条** 【투자 촉진 서비스】  국가는 외국투자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투자자와 기타 사회대중을 상대로 외국투자 관련 법률·법규, 정책조치, 투자프로젝트 및 투자정보 등에 관한 투자 촉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第一百零四条** 【투자 촉진 질서】  국가는 합리적이고 규범적인 투자 촉진 질서의 구축을 추진한다.  외국투자를 격려함에 있어 국가안전, 사회공공이익, 대중의 건강과 생명, 생태환경, 근로자의 권익 등에 피해를 주는 방식을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第一百零五条** 【국제투자촉진기구】  국가는 국제투자촉진기구가 외국투자 촉진 사업을 계획하고 전개하는 것을 지지한다. 국제투자촉진기구는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의 지도하에 다음 각 호의 직책을 이행한다.  (1) 외국투자에 관한 국가의 전략계획 및 정책조치를 실시한다;  (2) 전국 투자환경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한다;  (3) 전국적인 외국투자 공공정보·프로젝트·자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4) 전국적인 투자촉진 활동 및 투자촉진 교육 업무를 추진한다.  (5) 해외 투자촉진 대표기구를 설립한다.  (6)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의 투자촉진기구, 국제투자촉진조직과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한다.  (7) 외국투자자가 제기한 민원을 접수·처리하며 외국투자자와 외국투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협조한다.  **第一百零六条** 【국제투자 교류 플랫폼】  국제투자촉진기구는 국제투자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제투자를 활성화하고 촉진시킨다.  **第一百零七条** 【투자촉진 사이트와 데이터베이스】  국제투자촉진기구는 투자촉진 사이트 및 국제투자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보완한다.  **第一百零八条** 【지방 투자 촉진】  국가는 각 지방이 국제투자촉진 업무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며 투자촉진 전문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격려한다.  **第一百零九条** 【특수 경제지역】  국무원은 외국투자 촉진과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특수경제지역을 개설할 수 있다.  **第一百一十条** 【툭수 경제지역 관리】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와 관련 주관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특수 경제지역에 대한 지도, 서비스와 관리를 실시한다.  **제7장 투자 보호**  **第一百一十一条** 【징수】  국가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투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사회공공이익의 수요에 따라 외국투자를 징수해야 하는 경우 국가는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고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第一百一十二条** 【징용】  긴급 구조, 재해구조 등 긴급수요가 있을 경우 법률에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외국투자자, 외국투자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보유중인 부동산 또는 동산을 징용할 수 있다.  외국투자자, 외국투자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보유중인 부동산 또는 동산을 징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징용된 부동산 또는 동산은 사용한 후 피징용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징용된 부동산 또는 동산이 훼손, 멸실된 경우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第一百一十三条** 【국가배상】  국가기관과 그 실무자가 직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을 위반하여 외국투자자, 외국투자기업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외국투자자, 외국투자기업은 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第一百一十四条** 【이전】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는 출자, 이윤, 자산처분소득, 법에 따라 취득한 보상금 또는 배상금 등 외국투자자의 합법적 재산의 자유로운 전입 또는 전출을 허용한다.  **第一百一十五条** 【투명도】  국가는 법에 따라 외국투자 관련 법률·법규 및 사법판결문을 적시에 공개해야 한다.  외국투자자, 외국투자기업은 법에 따라 법률·법규의 제정 절차에 참여하여 평론과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第一百一十六条** 【지적재산권 보호】  국가는 법에 따라 외국투자자, 외국투자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第一百一十七条** 【상회·협회】  외국투자자, 외국투자기업은 법에 따라 상회·협회를 설립하거나 상회·협회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법률·법규와 조직의 정관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관련 활동을 취급하고 자신의 권익을 수호할 수 있다.  **第一百一十八条** 【분쟁의 해결】  중국 경내에서의 투자와 경영활동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외국투자자는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협상, 조정, 민원제기, 재심사, 중재 또는 소송 등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제8장 민원 조율·처리**  **第一百一十九条** 【민원 조율·처리 제도】  국가는 외국투자 민원 조율·처리 제도를 수립하여 외국투자자, 외국투자기업과 행정기관 사이의 투자분쟁을 조율하고 처리한다.  **第一百二十条** 【민원 조율·처리센터의 직책】  국제투자촉진기구는 전국 외상투자 민원 조율·처리센터를 설립하여 전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투자 민원사항을 조율하고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직책을 이행한다.  (1) 외국투자 민원사항을 접수하고 전달하다.  (2) 관련 지방, 부서와 협력하여 외국투자 민원사항을 조율하고 처리한다.  (3) 외국투자 민원사항 처리방안의 실시상황을 감독·재촉하고 검사한다.  (4) 외국투자 민원사항의 구체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관련 지방, 부서에 정책 보완과 업무개선을 제안한다.  (5) 외국투자 민원 상황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第一百二十一条** 【협조 요청】  전국 외국투자 민원 조율·처리센터는 외국투자 민원 조율·처리 업무의 수요에 근거하여 관련 지방, 부서에 상황 설명, 자료 제공 및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第一百二十二条** 【조율·처리 건의】  전국 외국투자 민원 조율·처리센터가 이 법 제120조 【민원 조율·처리센터의 직책】에 근거하여 관련 지방, 부서에 건의를 제시한 경우 해당 지방과 부서는 건의사항을 처리해야 하며 적시에 그 처리결과를 전국 외국투자 민원 조율·처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第一百二十三条** 【민원 조율·처리 기구】  현급 이상의 지방 각 급 인민정부는 수요에 따라 외국투자 민원 조율·처리 기구를 설치하여 해당 관할구역 내의 외국투자자, 외국투자기업이 투자분쟁 중에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며 전국 외국투자 민원 조율·처리센터로부터 전달받은 민원사항을 책임지고 처리한다.  **第一百二十四条** 【민원 조율·처리 원칙】  외국투자 민원 조율·처리기구는 공평성, 공정성, 적법성의 원칙을 따르고 이 법과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민원을 조율하고 처리한다.  **第一百二十五条** 【성실한 민원 제기】  외국투자자, 외국투자기업은 민원 제기 시 사실대로 상황을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외국투자 민원 조율·처리기구의 업무수행에 협조해야 한다.  **제9장 감독과 검사**  **第一百二十六条** 【감독과 검사】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외국투자자, 외국투자기업의 이 법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공상, 세무, 외환, 회계감사 등 기타 행정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감독·검사 직책을 이행한다.  **第一百二十七条** 【감독·검사 절차의 개시】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외국투자자,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감독·검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1) 정기 발췌검사;  (2) 민원 제기에 의한 검사;  (3) 관련 부서, 사법기관의 건의사항과 전달사항에 근거한 검사;  (4) 직권에 의한 기타 검사.  **第一百二十八条** 【발췌검사】  발췌검사는 일반목적 발췌검사와 특수목적 발췌검사로 구분한다.  일반목적 발췌검사라 함은 외국투자 주관부서가 검사 대상자와 검사 사항을 무작위로 확정하여 추진하는 검사를 지칭하며; 특수목적 발췌검사라 함은 외국투자 주관부서가 외국투자의 유형, 경영규모, 소속업종, 지리구역 등 특정 조건에 따라 검사 대상자를 무작위로 확정하여 추진하는 검사를 지칭한다.  **第一百二十九条** 【제보】  그 어떠한 업체와 개인은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를 외국투자 주관부서에 제보할 권리가 있다.  제보자는 외국투자 주관부서에 비밀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第一百三十条** 【제보 내용의 조사·확인】  제보자는 제보자의 기본정보, 제보 대상자의 기본정보, 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관련 사실과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필요하다고 판다되는 경우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第一百三十一条** 【검사 내용】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검사한다.  (1) 실시 금지 목록에 열거된 분야에 대해 투자 실시 여부;  (2) 사전허가 없이 실시 제한 목록에 열거된 분야에 대해 투자 실시 여부;  (3) 진입허가 결정에 부가된 조건 준수 여부;  (4) 국가안전심사결정에 부가된 제한적 조건 준수 여부;  (5) 정보보고 의무 이행 여부;  (6) 외국투자 주관부서가 내린 행정처벌결정 이행 여부;  (7) 국가안전과 사회공공이익을 해하는 행위 존재 여부;  (8) 이 법을 위반하는 기타 상황 존재 여부;  **第一百三十二条** 【검사 방식】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온라인 모니터링, 설문조사, 현장조사 등 방식으로 검사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第一百三十三条** 【현장조사】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최소 2명의 실무자를 배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실무자는 현장조사 수행 시 신분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실무자는 현장조사기록표를 작성하여 현장조사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고 검사 대상기업 또는 검사 대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서명 또는 날인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실무자는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하며 필요시 관계자를 증인으로 요청할 수 있다.  **第一百三十四条** 【전문가 결론】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검사 업무의 수요에 따라 회계사사무소, 세무사사무소, 변호사사무소 등 전문기구에 자본검사, 회계감사, 감정평가, 자문 등 전문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다.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기타 정부부서의 검사결과와 조사결과를 채택할 수 있다.  **第一百三十五条** 【검사 협조】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조회·열람하거나 검사 대상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 대상자는 관련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第一百三十六条** 【검사 기율】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검사 대상자의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검사 대상자가 상납한 재물과 서비스를 수수하거나 기타 불법이익을 도모해서는 아니된다.  **第一百三十七条** 【검사 처리】  검사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는 검사 대상자의 행위가 존재할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조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이 법 제10장 【법률책임】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第一百三十八条** 【정보 공유】  외국투자 주관부서, 기타 관련 행정주관부서는 외국투자 관리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第一百三十九条** 【지방 검사】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전국 외국투자 감독·검사 업무를 지도하고 총괄하며 업무 수요에 따라 검사 업무를 추진하거나 지방 외국투자 주관부서를 조직하여 검사 업무를 추진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 급 인민정부의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해당 관할구역 내의 외국투자 검사 업무를 담당한다.  **第一百四十条** 【지방 검사에 대한 지도와 감독】  상급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하급 외국투자 주관부서가 추진하는 검사 업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하급 외국투자 주관부서의 위법행위를 신속히 시정해야 한다.  **第一百四十一条** 【신용기록】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외국투자 신용기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외국투자 신용기록 시스템에 기록되는 정보는 외국투자자, 외국투자기업의 설립등기, 생산경영활동 과정에서 형성된 정보와 외국투자 주관부서 및 기타 주관부서가 감독·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외국투자자와 외국투자기업의 신용상황을 반영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상세한 외국투자 신용기록 시스템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  **第一百四十二条** 【신용정보의 공개】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외국투자자, 외국투자기업의 신용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사회대중은 외국투자자, 외국투자기업의 신용정보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의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공표하는 신용정보에는 외국투자자, 외국투자기업의 상업기밀, 개인 프라이버시가 포함되서는 아니된다.  **第一百四十三条** 【신용정보의 정정】  외국투자자와 외국투자기업은 외국투자 신용기록 시스템에 등록된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기록이 불완전하거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하여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기록을 정정한다.  **제10장 법률 책임**  **第一百四十四条** 【금지목록 내의 투자】  외국투자자가 실시 금지 목록에 열거된 분야에 투자한 경우 투자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투자 실시 중단 명령과 지분 또는 기타 자산의 기한부 처분 명령을 내려야 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해야 하며 1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 또는 불법투자액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第一百四十五条** 【진입허가 규정 위반】  외국투자자가 사전허가 없이 실시 제한 목록에 열거된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투자중단 명령과 지분 또는 기타 자산의 기한부 처분 명령을 내려야 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해야 하며 1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 또는 불법투자액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외국투자 진입허가 부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 결정을 내린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해야 하고 5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 또는 투자액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진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第一百四十六条** 【국가안전심사 규정 위반】  외국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해야 하고 1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 또는 투자액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더불어 이 법 제56조 【안전심사 재실시】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안전심사 재실시를 제안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심사 과정에서 관련 상황을 은폐하고 조작된 자료를 제공하였거나 허위진술을 한 경우;  (2) 국가안전심사 결정에 부가된 제한적 조건을 위반한 경우.  **第一百四十七条** 【정보보고 의무 위반에 따르는 행정법률책임】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투자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규정된 기한내에 정보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보보고 의무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정보를 보고함에 있어 사실을 은폐하고 유도적 또는 허위적 정보를 제공한 경우 투자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해야 하며; 기한이 경과할 때 까지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5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 또는 불법투자액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第一百四十八条** 【정보보고 의무 위반에 따르는 형사법률책임】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투자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정보보고 의무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정보를 보고함에 있어 사실을 은폐하고 유도적 또는 허위적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업체는 벌금형에 처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책임이 있는 자는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단기징역에 처한다.  **第一百四十九条** 【회피행위에 따르는 법률책임】  외국투자자, 외국투자기업이 주주명의 대여, 신탁, 다단계 재투자, 임대, 도급, 대출, 계약통제(協議控制), 역외거래 또는 기타 여하한 방식으로 이 법의 규정을 회피하고 실시 금지 목록에 열거된 분야에 투자하거나 사전허가 없이 실시 제한 목록에 열거된 분야에 투자하거나 이 법에 규정한 정보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 법 제144조 【금지목록 내의 투자】, 제145조 【진입허가 규정 위반】, 제147조 【정보보고 의무 위반에 따르는 행정법률책임】 또는 제148조 【정보보고 의무 위반에 따르는 형사법률책임】에 따라 각각 처벌한다.  **第一百五十条** 【강제집행 조치】  외국투자자, 외국투자기업이 기한이 경과할 때가지 외국투자 주관부서가 내린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해지 아니할 경우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만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2)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압류 재산을 경매처분하거나 압류한 예금을 이체하여 과태료를 충당한다.  (3)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第一百五十一条** 【증명서·허가증의 취소와 형사법률책임】  외국투자자, 외국투자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산업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증명서·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의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第一百五十二条** 【관리부서 공무원의 법률책임】  외국투자 주관부서 및 기타 관련 관리부서의 공무원이 직책 이행 과정에서 사리를 도모하는 부정행위,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행위를 행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며;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1장 부칙**  **第一百五十三条** 【효력발생 전 존속기업】  이 장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부터 법에 따라 존속해 온 외국투자기업은 이 법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第一百五十四条** 【효력발생 전 존속기업의 변경】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부터 법에 따라 존속해 온 외국투자기업이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 추진하는 경영사항의 변경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진입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진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부터 법에 따라 존속해 온 외국투자기업이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 신규로 추가하는 투자금액이 실시 제한 목록에 규정한 기준에 도달한 경우 진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第一百五十五条** 【기존 조건에 따른 지속경영】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부터 법에 따라 존속해 온 외국투자기업은 기존에 승인을 득한 경영범위, 기한 및 기타 조건에 따라 경영을 지속할 수 있다.  **第一百五十六条** 【경영기한】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한 후 각 투자 당사자가 스스로 임의의 경영기한을 약정할 수 있다. 단, 외국투자 주관부서가 이 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경영기한을 진입허가의 조건으로 설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법이 공표된 후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경영기한이 만료되었고 각 투자 당사자가 경영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한 후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변경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각 투자 당사자가 스스로 약정하였거나 변경한 경영기한이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제3자는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第一百五十七条** 【기업의 조직형태 및 조직기구의 변경】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부터 법에 따라 존속해 온 외국투자기업은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한 후 3년 내에 <회사법>, <동업기업법(合夥企業法)>, <개인독자기업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조직형태와 조직기구를 변경해야 한다. 단, 기업의 기존 경영기한이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한 후 3년 내에 만료될 예정이고 기존 경영기한이 만료된 후 경영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경영기한 내에 변경해야 한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을 완료하기 전까지 <중외합자격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상의 기업 조직형태 및 조직기구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적용받는다.  **第一百五十八条** 【협의통제(協議控制)의 처리】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법>(의견수렴안)에 대한 설명" 참고)  **第一百五十九**【외국 국적 취득】  중국 국적의 자연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연인의 중국 경내 투자는 그 투자시점의 이 법의 효력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외국투자에 귀속되며 이 법의 관련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단, 국무원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第一百六十条** 【외국 영주권 취득】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 국적 자연인의 중국 경내 투자 대우와 관련하여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第一百六十一条** 【중국내 영구거류권 취득】  중국내 영구거류권을 취득한 외국 국적 자연인의 경내 투자 대우와 관련하여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第一百六十二条**【타이완(臺灣) 동포에 의한 투자】  타이완(臺灣) 동포가 내륙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이 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타이완(臺灣) 동포의 내륙지역 투자에 대한 특별대우는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  **第一百六十三条** 【홍콩·마카오 동포 및 화교에 의한 투자】  홍콩·마카오 동포 및 화교가 내륙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이 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홍콩·마카오 동포 및 화교의 내륙지역 투자에 대한 특별대우는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  **第一百六十四条** 【법률 적용】  외국투자자가 체결한 중국 경내에서 이행하는 투자계약은 중국 법률의 관할을 받는다.  **第一百六十五条** 【대응 조치】  그 어떠한 국가 또는 지역이 중국투자자 및 중국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국가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第一百六十六条** 【금융분야에 대한 외국투자】  외국투자자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관련 금융주관부서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진입허가와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第一百六十七条** 【가격표시통화】  외국투자 관리 및 통계는 인민폐를 주요 가격표시통화로 채택한다.  **第一百六十八条** 【해당 숫자 포함 여부】  이 법에서 "이상", "이하", "도달"은 해당 숫자를 포함하며 "초과", "미만"은 해당 숫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第一百六十九条** 【실시방법】  국무원은 이 법에 근거하여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第一百七十条** 【효력 발생】  이 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및 <중회합작경영기업법>은 동시에 폐지된다. |  | **中华人民共和国外国投资法**  （草案征求意见稿）  第一章 总 则  第二章 外国投资者和外国投资  第三章 准入管理  第四章 国家安全审查  第五章 信息报告  第六章 投资促进  第七章 投资保护  第八章 投诉协调处理  第九章 监督检查  第十章 法律责任  第十一章 附 则    **第一章 总 则**  **第一条** 【立法目的】  为扩大对外开放，促进和规范外国投资，保护外国投资者合法权益，维护国家安全和社会公共利益，促进社会主义市场经济健康发展，制定本法。  **第二条**【适用范围】  外国投资者在中国境内投资适用本法。  **第三条**【投资保护】  国家依法保护外国投资者、外国投资企业的合法权益。  **第四条**【遵守国内法】  外国投资者、外国投资企业应当遵守中国法律，不得损害国家安全和社会公共利益。  外国投资者、外国投资企业进行投资、从事经营活动，应当遵守社会公德、商业道德，诚实守信，接受社会监督，承担社会责任。  **第五条**【外资管理制度】  国家实行统一的外国投资管理制度。  **第六条**【国民待遇】  外国投资者在中国境内投资享有国民待遇，但根据本法第二十三条【目录制定程序】所制定的外国投资特别管理措施目录（以下简称特别管理措施目录）另有规定的除外。  **第七条**【投资促进】  国家制定和实施与社会主义市场经济相适应的外国投资促进政策，推动投资便利化，建立健全统一开放、竞争有序的市场体系。  **第八条**【公开透明原则】  国家对外国投资者在中国境内投资的管理，应遵循公开、透明的原则。  **第九条**【外国投资主管部门】  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依照本法主管全国外国投资管理和促进工作。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外国投资主管部门依法定权限负责本辖区的外国投资管理和促进工作。  **第十条**【投资条约】  国家根据平等互利的原则，促进和发展同其他国家和地区的投资，缔结多双边、区域投资条约、公约、协定。  **第二章 外国投资者和外国投资**  **第十一条**【外国投资者】  本法所称的外国投资者，是指在中国境内投资的以下主体：  （一）不具有中国国籍的自然人  （二）依据其他国家或者地区法律设立的企业；  （三）其他国家或者地区政府及其所属部门或机构；  （四）国际组织。  受前款规定的主体控制的境内企业，视同外国投资者。  **第十二条**【中国投资者】  本法所称的中国投资者，是指以下主体：  （一）具有中国国籍的自然人；  （二）中国政府及其所属部门或机构；  （三）受前两项主体控制的境内企业。  **第十三条**【境内企业】  本法所称的境内企业，是指依据中国法律在中国境内设立的企业。  **第十四条**【外国投资企业】  本法所称的外国投资企业，是指全部或者部分由外国投资者投资、依据中国法律在中国境内设立的企业。  **第十五条**【外国投资】  本法所称的外国投资，是指外国投资者直接或者间接从事的如下投资活动：  （一）设立境内企业；  （二）取得境内企业的股份、股权、财产份额、表决权或者其他类似权益；  （三）向其持有前项所称权益的境内企业提供一年期以上融资；  （四）取得境内或其他属于中国资源管辖领域自然资源勘探、开发的特许权，或者取得基础设施建设、运营的特许权；  （五）取得境内土地使用权、房屋所有权等不动产权利；  （六）通过合同、信托等方式控制境内企业或者持有境内企业权益。  境外交易导致境内企业的实际控制权向外国投资者转移的，视同外国投资者在中国境内投资。  **第十六条**【不动产权利】  外国投资者取得中国境内土地使用权、房屋所有权等不动产权利的，适用有关法律法规的规定，同时还应遵守本法第四章【国家安全审查】、第五章【信息报告】的规定。  **第十七条**【非营利组织】  外国投资者在中国境内设立非营利组织或取得非营利组织权益的，适用有关法律法规的规定，同时还应遵守本法第四章【国家安全审查】、第五章【信息报告】的规定。  **第十八条**【控制】  本法所称的控制，就某一企业而言，是指符合以下条件之一的情形：  （一）直接或者间接持有该企业百分之五十以上的股份、股权、财产份额、表决权或者其他类似权益的。  （二）直接或者间接持有该企业的股份、股权、财产份额、表决权或者其他类似权益虽不足百分之五十，但具有以下情形之一的：  1. 有权直接或者间接任命该企业董事会或类似决策机构半数以上成员；  2. 有能力确保其提名人员取得该企业董事会或类似决策机构半数以上席位；  3. 所享有的表决权足以对股东会、股东大会或者董事会等决策机构的决议产生重大影响。  （三）通过合同、信托等方式能够对该企业的经营、财务、人事或技术等施加决定性影响的。  **第十九条**【实际控制人】  本法所称的实际控制人，是指直接或者间接控制外国投资者或者外国投资企业的自然人或者企业。  **第三章 准入管理**  **第一节 一般规定**  **第二十条**【外资准入制度】  国家实行统一的外国投资准入制度，对禁止或限制外国投资的领域依据特别管理措施目录实施管理。  **第二十一条**【外资准入主管部门】  外国投资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对外国投资实施准入管理。  **第二十二条**【特别管理措施目录】  对外国投资者及其投资给予低于中国投资者及其投资的待遇或施加其他限制的，须以法律、行政法规或国务院决定的形式予以规定，并纳入特别管理措施目录。  **第二十三条**【目录制定程序】  特别管理措施目录由国务院统一制定并发布。  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根据国家缔结的多双边、区域投资条约、公约、协定和有关外国投资的法律、行政法规、国务院决定，提出制定或调整特别管理措施目录的建议，提交国务院审议。  **第二十四条**【目录分类】  特别管理措施目录分为禁止实施目录和限制实施目录。  限制实施目录应详细列明对外国投资的限制条件。  **第二十五条**【禁止实施目录】  外国投资者不得投资禁止实施目录列明的领域。  外国投资者直接或者间接持有境内企业的股份、股权、财产份额或者其他权益、表决权，该境内企业不得投资禁止实施目录中列明的领域，国务院另有规定的除外。  **第二十六条**【限制实施目录】  限制实施目录包括以下情形：  （一）超过国务院规定的金额标准的投资；  （二）限制实施外国投资的领域。  外国投资涉及限制实施目录所列情形的，应符合限制实施目录规定的条件，并依照本法向外国投资主管部门申请外国投资准入许可。  未在限制实施目录中列明的，无需申请准入许可。  **第二节 准入许可**  **第二十七条**【外资准入许可申请】  实施本法第二十六条【限制实施目录】第一款第（一）项规定的投资，应向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申请准入许可。  实施本法第二十六条【限制实施目录】第一款第（二）项规定的投资，应向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或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外国投资主管部门申请准入许可。具体许可权限划分，由国务院规定。  **第二十八条**【投资数额的累积计算】  外国投资者在两年内针对同一投资事项多次实施投资，其投资金额累积达到限制实施目录中规定的标准的，应当依照本法申请准入许可。  **第二十九条**【融资计入投资数额】  外国投资者向其持有权益的境内企业直接或间接提供一年以上融资的，应将融资数额纳入投资数额加以计算。  **第三十条**【准入许可申请材料】  外国投资者依据本法第二十七条【外资准入许可申请】向外国投资主管部门提出准入许可申请时，应提交以下材料：  （一）申请书，包括：  1. 外国投资者及其实际控制人的情况；  2. 外国投资基本信息，包括投资金额、投资领域、投资区域、投资方式、出资比例和方式等；  3. 符合特别管理措施要求的说明；  4. 外国投资对能源资源、技术创新、就业、环境保护、安全生产、区域发展、资本项目管理、行业发展的影响；  5. 对是否触发国家安全审查和反垄断审查的说明；  6. 需申领前置性行业许可的，提交行业主管部门颁发的许可证件；  7. 涉及外国投资企业的设立或变更的，提交该外国投资企业的组织形式、治理结构等信息；  8. 通知和送达方式。  （二）与申请书内容有关的文件和证明材料；  （三）外国投资者及其实际控制人的陈述、声明及对申请材料真实性、完整性的承诺。  外国投资主管部门可要求外国投资者补充提交与前款规定内容相关的材料。  **第三十一条**【受理】  申请材料齐全并符合法定形式的，外国投资主管部门应当受理准入许可申请，并向申请人出具受理回执。  申请材料不齐全或不符合法定形式的，应当场或者在5个工作日内一次告知申请人需要补正的全部内容，逾期不告知的，自收到申请材料之日起即为受理。  **第三十三条**【审查因素】  外国投资主管部门应从以下方面对外国投资进行准入审查：  （一）对国家安全的影响；  （二）是否符合特别管理措施目录规定的条件；  （三）对能源资源、技术创新、就业、环境保护、安全生产、区域发展、资本项目管理、竞争、社会公共利益等的影响；  （四）对于行业发展的实际影响与控制力；  （五）国际条约义务；  （六）外国投资者及其实际控制人的情况；  （七）国务院规定的其他因素。  **第三十三条**【准入许可和行业许可的关系】  外国投资涉及需申领前置性行业许可的领域的，外国投资主管部门在审查决定中说明行业许可获得情况。  外国投资涉及需申领非前置性行业许可的领域的，外国投资主管部门应在审查时征求相关行业主管部门意见。行业主管部门出具审查意见书，外国投资主管部门在审查决定中说明行业主管部门的审查意见。  **第三十四条**【准入许可和安审的衔接】  外国投资主管部门在进行准入审查时，发现外国投资事项危害或可能危害国家安全的，应暂停准入审查程序，并书面告知申请人提交国家安全审查申请；进行准入审查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外国投资主管部门应将有关情况报告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除非申请人撤回准入许可申请，外国投资者应当按照本法第四章【国家安全审查】提交国家安全审查申请。  **第三十五条**【审查期限】  外国投资主管部门应在受理准入许可申请之日起30个工作日内完成审查。情况复杂的可延长30个工作日。  发生本法第三十四条【准入许可和安审的衔接】规定的情形并进入国家安全审查程序的，进行国家安全审查的期限不计入前款所列的审查期限。  **第三十六条**【审查决定】  外国投资主管部门依法对外国投资事项作出批准、附加条件批准或不予批准的书面决定，并通知申请人；作出附加条件批准或不予批准决定的，应当说明理由。  **第三十七条**【附加条件的类型】  外国投资主管部门作出审查决定时可附加以下一项或几项条件：  （一）资产或业务剥离；  （二）持股比例限制；  （三）经营期限要求；  （四）投资区域限制；  （五）当地用工比例或数量要求；  （六）国务院规定的其他条件。  外国投资主管部门附加以上一项或多项条件的，应在审查决定中列明。  **第三十八条**【征求意见】  外国投资主管部门进行准入审查时，可征求相关部门、地方和其他利害关系人意见。  **第三十九条**【征求社会公众意见】  外国投资主管部门进行准入审查时，认为申请事项可能对社会公共利益造成重大影响的，可通过召开论证会、举行公开听证等方式征求社会公众意见。  **第四十条**【申辩机会】  外国投资主管部门进行准入审查，拟作出附加条件批准或者不予批准决定的，应给予外国投资者申辩的机会。  **第四十一条**【批准决定时效】  外国投资者自批准决定作出之日起1年内未实施投资行为的，应向作出批准决定的外国投资主管部门说明情况。外国投资主管部门认为有必要的，外国投资者应重新提出准入许可申请。  **第四十二条**【办理手续】  外国投资依照本法须经准入许可的，外国投资者应在获得准入许可后办理登记、外汇、税务等手续。  外国投资依照本法无需申请准入许可的，外国投资者可依据相关法律法规办理登记、外汇、税务等手续。  **第四十三条**【许可决定的公开】  外国投资主管部门应向社会公布外国投资准入许可决定，但依法不予公开的除外。  **第四十四条**【遵守附加条件的报告】  外国投资依照本法获得附加条件准入许可的，外国投资者或外国投资企业在依据本法第五章【信息报告】第四节【定期报告】提交年度报告时应同时说明上一年度遵守附加条件开展经营的有关情况。  **第四十五条**【实际控制情形下视为内资】  本法第十一条【外国投资者】第一款第（二）项所规定的外国投资者，受中国投资者控制的，其在中国境内从事限制实施目录范围内的投资，在申请准入许可时，可提交书面证明材料，申请将其投资视作中国投资者的投资。  外国投资主管部门在进行准入许可审查时，应对外国投资者依据前款规定提出的申请进行审查，作出是否视作中国投资者的投资的审查意见，并在准入许可决定中予以说明。  **第四十六条**【外资准入审查指南】  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应编制和公布外国投资准入审查指南。  **第四十七条** 【咨询】  外国投资者及其利害关系人可就外国投资准入许可的范围和程序向本法第二十七条【外资准入许可申请】规定的外国投资主管部门提出咨询。  外国投资主管部门应在接到咨询申请后10个工作日内作出答复。  **第四章 国家安全审查**  **第四十八条**【安全审查制度】  为确保国家安全，规范和促进外国投资，国家建立统一的外国投资国家安全审查制度，对任何危害或可能危害国家安全的外国投资进行审查。  **第四十九条**【安审联席会议】  国务院建立外国投资国家安全审查部际联席会议（以下简称联席会议），承担外国投资国家安全审查的职责。  国务院发展改革部门和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共同担任联席会议的召集单位，会同外国投资所涉及的相关部门具体实施外国投资国家安全审查。  **第五十条**【投资者申请安审】  外国投资危害或可能危害国家安全的，外国投资者可向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提交国家安全审查申请。  **第五十一条**【安审申请材料】  外国投资者向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提出国家安全审查申请时，应提交以下材料：  （一）申请书，包括：  1. 外国投资者及其实际控制人、高级管理人员情况；  2. 外国投资基本信息，包括投资金额、投资领域、投资区域、投资方式、出资比例和方式、经营计划等；  3. 外国投资危害或可能危害国家安全的说明；  4. 涉及外国投资企业的设立或变更的，提交该外国投资企业的组织形式、治理结构等信息；  5. 通知和送达方式。  （二）与申请书内容有关的文件和证明材料；  （三）外国投资者及其实际控制人的陈述、声明及对申请材料真实性、完整性的承诺。  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可在国家安全审查过程中要求外国投资者及其他当事人补充提交相关材料。  **第五十二条** 【预约商谈】  向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提出安全审查申请之前，外国投资者可就有关程序性问题提出预约商谈的请求，提前沟通有关情况。  **第五十三条**【确定是否需要进行安审】  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应在收到第五十一条【安审申请材料】规定的申请材料后15个工作日内告知申请人有关外国投资事项是否需要进行国家安全审查。  需要进行国家安全审查的，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在告知申请人后5个工作日内提请联席会议进行审查。  **第五十四条** 【投资者撤回安审申请】  外国投资者提出国家安全审查申请后，未经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同意，不得撤回申请。  **第五十五条** 【依职权启动安审】  联席会议可依职权决定对危害或可能危害国家安全的外国投资进行国家安全审查。  有关部门、行业协会、同业企业、上下游企业及外国投资者以外的其他当事人认为某一外国投资需要进行国家安全审查的，可向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提出进行国家安全审查的建议。联席会议认为确有必要进行国家安全审查的，可以决定进行审查。  联席会议作出启动国家安全审查决定的，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应书面告知外国投资者。  **第五十六条** 【再次进行安审】  具有下列情形的，联席会议可依据本法第五十五条【依职权启动安审】对已审查的外国投资再次进行国家安全审查：  （一）外国投资者或其他当事人在审查过程中隐瞒有关情况，提供虚假材料或者进行虚假陈述的；  （二）外国投资者或其他当事人违反了审查决定中所附限制性条件实施投资的。  **第五十七条** 【安审因素】  对外国投资进行国家安全审查应当考虑的因素包括：  （一）对国防安全，包括对国防需要的国内产品生产能力、国内服务提供能力和有关设备设施的影响，对重点、敏感国防设施安全的影响；  （二）对涉及国家安全关键技术研发能力的影响；  （三）对涉及国家安全领域的我国技术领先地位的影响；  （四）对受进出口管制的两用物项和技术扩散的影响；  （五）对我国关键基础设施和关键技术的影响；  （六）对我国信息和网络安全的影响；  （七）对我国在能源、粮食和其他关键资源方面长期需求的影响；  （八）外国投资事项是否受外国政府控制；  （九）对国家经济稳定运行的影响；  （十）对社会公共利益和公共秩序的影响；  （十一）联席会议认为应当考虑的其他因素。  **第五十八条** 【安审决定类型】  根据国家安全审查结果，国务院或者联席会议可作出如下决定：  （一）外国投资不危害国家安全的，予以通过；  （二）外国投资危害或者可能危害国家安全、但可通过附加限制性条件消除的，予以附条件通过；  （三）外国投资危害或者可能危害国家安全且无法消除的，不予通过。  **第五十九条** 【配合安审义务】  外国投资者及其他当事人应配合联席会议进行国家安全审查，提供审查需要的信息，接受有关询问或核查。  **第六十条** 【安审阶段】  联席会议进行国家安全审查，分为一般性审查阶段和特别审查阶段。  **第六十一条** 【一般性审查时限】  一般性审查应在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依据本法第五十三条【确定是否需要进行安审】提请联席会议进行审查之日或者联席会议依据本法第五十五条【依职权启动安审】决定进行国家安全审查之日起30个工作日内完成。  **第六十二条** 【一般性审查意见】  经过一般性审查后，如联席会议认为外国投资不危害国家安全的，应形成审查意见，并书面通知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认为外国投资可能存在危害国家安全风险的，应决定进行特别审查，并书面通知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  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在收到联席会议审查意见后5个工作日内书面通知申请人和有关当事人。  **第六十三条** 【特别审查时限】  特别审查应在依据本法第六十二条【一般性审查意见】规定启动特别审查程序之日起60个工作日内完成。  启动特别审查程序后，联席会议应当组织对外国投资的安全评估，并结合评估意见进行审查。  **第六十四条** 【特别审查意见】  经特别审查后，联席会议认为外国投资不危害国家安全的，应提出书面审查意见并书面通知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在收到联席会议审查意见后5个工作日内书面通知申请人和有关当事人。  在特别审查过程中，联席会议认为外国投资危害或可能危害国家安全的，应提出书面审查意见，报请国务院决定。予以通过的，由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书面通知申请人和有关当事人；予以否决的，由国务院作出否决决定。  **第六十五条**【附加限制性条件】  为避免有关外国投资对国家安全可能产生的危害，申请人可在审查决定作出前向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提出对有关外国投资附加限制性条件的建议。  联席会议应对该建议的有效性和可行性进行评估。  联席会议可根据评估结果与有关当事人议定附加限制性条件，包括对投资进行必要的调整，以消除对国家安全可能产生的危害。  **第六十六条** 【附条件通过】  经过评估并与当事人达成一致，联席会议可作出予以附条件通过的决定，并书面通知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告知申请人和有关当事人。  **第六十七条** 【附条件的监督执行】  外国投资按照本法获得附加限制性条件通过国家安全审查的，外国投资者、外国投资企业在依据本法第五章【信息报告】第四节【定期报告】提交年度报告时应同时说明上一年度遵守限制性条件的有关情况。  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采取适当措施监督限制性条件的执行情况。有关当事人违反限制性条件对国家安全造成危害或者有可能造成危害的，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可依据本法第五十六条【再次进行安审】规定再次提请国家安全审查。  **第六十八条** 【安审指南】  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应编制和公布外国投资国家安全审查指南。  **第六十九条** 【安审年度报告】  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应编制和公布外国投资国家安全审查年度报告。  **第七十条** 【安审临时措施】  国家安全审查程序进行中，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可采取必要的临时措施，以维护国家安全。  **第七十一条**【安审强制措施】  经过国家安全审查认定外国投资对国家安全已经造成或可能造成重大危害的，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应责令当事人不得实施或者终止外国投资，或采取转让相关股权、资产或其他有效措施，消除或者避免外国投资对国家安全的危害。  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可会同有关部门采取必要措施，消除或者避免外国投资对国家安全的危害。  **第七十二条** 【法律责任承担】  外国投资者未申请国家安全审查而实施投资，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依据本法第七十条【安审临时措施】、第七十一条【安审强制措施】采取措施给已实施投资造成损失的，由外国投资者承担。  **第七十三条** 【行政复议和诉讼的豁免】  对于依据本章作出的国家安全审查决定，不得提起行政复议和行政诉讼。  **第七十四条** 【外国投资金融领域安全审查制度】  外国投资者投资金融领域的国家安全审查制度，由国务院另行规定。    **第五章 信息报告**  **第一节 一般规定**  **第七十五条** 【信息报告制度】  国家建立和完善外国投资信息报告制度，及时、准确、全面掌握全国外国投资情况和外国投资企业运营状况，为制定和完善外国投资法律法规及政策、促进和引导外国投资提供依据。  **第七十六条** 【信息报告管理】  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建立外国投资信息报告系统，制定信息报告管理制度，负责全国外国投资信息的汇总、分析、发布和对外交流工作。  **第七十七条** 【外国投资分析报告】  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编写并发布年度外国投资分析报告，包括外国投资的行业分析、经济效益、社会影响以及政策建议等内容。  **第七十八条** 【信息报告主体】  外国投资者、外国投资企业应当依据本法履行信息报告义务。  **第七十九条** 【信息报告途径】  外国投资者、外国投资企业通过外国投资信息报告系统向外国投资主管部门报告信息。  **第八十条** 【如实报告】  外国投资者、外国投资企业应当依照本法真实、准确、完整地提供信息，不得有虚假记载、误导性陈述或重大遗漏。  **第八十一条** 【组合投资报告】  外国投资者购买境内上市公司股票，应按《证券法》和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的相关规定履行报告、公告及其他法定义务。  外国投资者购买境内上市公司股票10%以上，或者不足10%但导致境内上市公司控制权发生变更的，应当依照本章规定履行报告义务。  外国投资者购买境内上市公司股票不足10%且未导致境内上市公司控制权发生变更的，应当依照本法第九十三条【年度报告内容—组合投资】履行报告义务。  **第八十二条** 【报告信息公示】  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可通过外国投资信息报告系统向社会公示外国投资者、外国投资企业提供的信息。  **第八十三条** 【报告信息查询】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可依法向外国投资主管部门申请查询外国投资信息。  **第八十四条** 【信息公示的例外】  外国投资信息涉及外国投资者、外国投资企业的商业秘密、个人隐私的，不予公开，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外。  **第二节 外国投资事项报告**  **第八十五条** 【信息报告时间】  外国投资者或外国投资企业应在投资实施前或投资实施之日起30日内依照本节规定提交信息报告。  法律法规对实施外国投资有登记要求的，以完成相应登记之日为投资实施之日；没有登记要求的，以投资交易完成之日为投资实施之日。  **第八十六条** 【实际投资变化报告】  外国投资者在投资实施前提交信息报告，实际投资情况发生变化的，应在投资实施之日起30日内报告变化情况。  **第八十七条** 【信息报告内容】  外国投资者在中国境内投资涉及外国投资企业的设立或变更的，外国投资企业应报告以下信息：  （一）外国投资者基本信息，包括名称、住所、注册地、实际控制人、组织形式、主营业务、联系人及联系方式；  （二）外国投资基本信息，包括投资金额、投资来源地、投资领域、投资区域、投资时间、投资方式、出资比例和方式，获得相关行政许可或备案的情况；  （三）外国投资企业基本信息，包括名称、住所、组织机构代码、注册地、股权结构、投资金额、注册资本、实际控制人、组织形式、经营范围、联系人及联系方式；  外国投资者在中国境内投资不涉及外国投资企业的设立或变更的，仅需报告前款（一）和（二）项内容。  外国投资主管部门可要求外国投资者或外国投资企业补充提交与前两款规定信息相关的材料。  **第八十八条**【准入许可情况的报告】  外国投资需按照本法规定获得准入许可的，应在获得准入许可后30日内履行报告义务。除按照本法第八十七条【信息报告内容】报告有关信息外，还应报告获得准入许可的有关情况。  **第三节 外国投资事项变更报告**  **第八十九条** 【变更报告内容】  外国投资事项发生变更的，外国投资者或外国投资企业应在变更事项发生后30日内提交变更报告。  前款所称变更包括：  （一）外国投资者的名称、住所、注册地、实际控制人、组织形式、主营业务、联系人及联系方式发生变更；  （二）外国投资者的身份因发生合并、分立、破产、解散、撤销、吊销、注销或改变国籍、死亡而发生变更；  （三）外国投资的投资金额、投资来源地、投资领域、投资区域、投资时间、投资方式、出资比例和方式，获得相关行政许可或备案的情况发生变更；  （四）外国投资权益被转让、出租、抵押或质押；  （五）外国投资企业的名称、住所、组织机构代码、注册地、股权结构、投资金额、注册资本、实际控制人、组织形式、经营范围、联系人及联系方式发生变更；  （六）外国投资企业的身份因发生合并、分立、破产、解散、撤销、吊销、注销而发生变更；  外国投资主管部门可要求外国投资者或外国投资企业补充提交与前款规定信息相关的材料。  **第九十条** 【触发新的准入许可】  发生本法第八十九条【变更报告内容】规定的变更情形，触发新的外国投资准入许可的，外国投资者应依照本法申请准入许可。  **第九十一条** 【违反准入许可条件】  发生本法第八十九条【变更报告内容】规定的变更情形，可能违反外国投资准入许可所附条件的，外国投资者在提交变更报告时应同时予以说明，并提出解决方案。作出准入许可的外国投资主管部门可视情形开展调查，必要时可要求采取补救措施或依照本法重新申请准入许可。  **第四节 定期报告**  **第九十二条** 【年度报告内容】  外国投资者在中国境内投资涉及外国投资企业的设立或变更的，外国投资企业应在每年4月30日前提交上一年度的信息报告，包括以下内容：  （一）外国投资者基本信息，包括名称、住所、注册地、实际控制人、组织形式、主营业务、联系人及联系方式；  （二）外国投资基本信息，包括投资金额、投资来源地、投资领域、投资区域、投资时间、投资方式、出资比例和方式，获得相关行政许可或备案的情况；  （三）外国投资企业基本信息，包括名称、住所、组织机构代码、注册地、股权结构、投资金额、注册资本、实际控制人、组织形式、经营范围、联系人及联系方式；  （四）上一年度外国投资企业经营状况信息，包括行业领域、主要产品或服务、进出口、用工情况、纳税、研发等；  （五）上一年度外国投资企业财务会计信息，包括资产、负债、所有者权益、收入、费用、利润等；  （六）上一年度外国投资企业与外国投资者及其关联方开展的投资和进出口贸易情况等；  （七）上一年度外国投资企业在境内外涉及的重大诉讼、行政复议、行政或刑事处罚以及依照本法第八章【投诉协调处理】提起的投诉等有关情况；  外国投资者在中国境内投资不涉及外国投资企业的设立或变更的，应在每年4月30日前提交年度报告，内容包括前款第（一）、（二）项规定的信息以及上一年度投资资产的交易和投资收益情况。  外国投资主管部门可要求外国投资者或外国投资企业补充提交与前两款规定信息相关的材料。  **第九十三条** 【年度报告内容—组合投资】  外国投资者购买境内上市公司股票不足10%且未导致境内上市公司控制权发生变更的，购买境内上市公司股票的外国投资者应在每年4月30日前提交包括以下信息的年度报告：  （一）外国投资者的名称、住所、注册地、实际控制人、组织形式、主营业务、联系人及联系方式；  （二）上市公司的名称、股票交易代码、经营范围；  （三）上一年度股票交易情况。  **第九十四条** 【重点外国投资企业的季度报告】  由外国投资者控制的外国投资企业，其资产总额、销售额或营业收入超过100亿元人民币，或其子公司数量超过10家的，应在每季度结束后30日内报告季度经营状况信息和财务会计信息。  **第九十五条** 【整合报告】  外国投资企业应当整合其直接或间接控制的境内企业的相关信息后一并报告。  **第五节 外国投资统计**  **第九十六条** 【外国投资统计】  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依据《统计法》和国家有关规定，建立健全外国投资统计调查制度和统计标准，组织、协调和管理全国范围内的外国投资统计调查工作，结合外国投资者、外国投资企业信息报告内容，开展统计分析，发布统计数据，并做好档案管理、数据信息共享和对外交流工作。  **第九十七条** 【统计报告】  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对外国投资者、外国投资企业提交信息报告的相关内容进行汇总、归纳，编写并发布外国投资统计报告。  **第九十八条** 【提供信息义务】  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开展外国投资统计工作时，可依法要求有关地方、部门提供相关信息和数据，有关地方、部门应当予以配合。  **第九十九条** 【统计数据共享】  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应当依法向相关部门提供外国投资统计数据。  **第六章 投资促进**  **第一百条** 【投资促进机制】  国家制定外国投资发展战略，建立和完善外国投资促进机制，引导外国投资与我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相适应，提升利用外国投资的质量和水平。  **第一百零一条** 【投资促进政策】国家依法制定财政、税收、金融、人才、产业、培训、研发等方面的政策措施，促进外国投资。  **第一百零二条** 【行业区域政策】  国家根据国内经济社会发展和产业转移形势需要，促进外国投资者在国家鼓励的行业领域，以及特殊经济区域、民族自治地方和经济不发达地区投资，举办产品、服务或者技术先进的外国投资企业。  **第一百零三条** 【投资促进服务】  国家建立外国投资公共服务体系，向外国投资者和其他社会公众提供与外国投资相关的法律法规、政策措施、投资项目和信息等方面的投资促进服务。  **第一百零四条** 【投资促进秩序】  国家推动建立合理规范的投资促进秩序。  不得以损害国家安全、社会公共利益、公众生命健康、生态环境、劳动者权益等方式鼓励外国投资。  **第一百零五条** 【国际投资促进机构】  国家支持国际投资促进机构组织开展外国投资促进活动。国际投资促进机构在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指导下履行以下职责：  （一）实施国家关于外国投资的战略规划和政策措施；  （二）建立并实施全国投资环境评价体系；  （三）建立全国性外国投资公共信息、项目与咨询服务平台；  （四）开展全国性投资促进活动和投资促进培训工作；  （五）设立海外投资促进代表机构；  （六）与其他国家或地区的投资促进机构、国际投资促进组织开展交流与合作；  （七）接受和协调处理外国投资者投诉，协助维护外国投资者和外国投资企业的合法权益。  **第一百零六条** 【国际投资交流平台】  国际投资促进机构举办建立国际投资交流平台，推动和促进跨国投资。  **第一百零七条** 【投资信息网站和数据库】  国际投资促进机构建立和完善国际投资促进网站和国际投资项目数据库。  **第一百零八条** 【地方投资促进】  国家鼓励各地方建立和完善国际投资促进工作机制，设立专门的投资促进机构。  **第一百零九条** 【特殊经济区域】  国务院可以设立特殊经济区域，促进外国投资，扩大对外开放。  **第一百一十条** 【特殊经济区域管理】  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及相关主管部门根据各自职责对特殊经济区域进行指导、服务和管理。  **第七章 投资保护**  **第一百一十一条** 【征收】  除特殊情况外，国家对外国投资不实行征收。  国家根据社会公共利益需要对外国投资实行征收的，应依照法定程序进行，并依法给予补偿。  **第一百一十二条** 【征用】  因抢险、救灾等紧急需要，依照法律规定的权限和程序，可以征用外国投资者、外国投资企业在中国境内的不动产或者动产。  征用外国投资者、外国投资企业在中国境内的不动产或者动产的，应当依法支付合理的使用费。被征用的不动产或者动产使用后，应当返还被征用人。被征用的不动产或者动产损毁、灭失的，应当依法予以补偿。  **第一百一十三条** 【国家赔偿】  国家机关及其工作人员违法行使职权给外国投资者、外国投资企业造成损失的，外国投资者、外国投资企业有权依法要求赔偿。  **第一百一十四条** 【转移】  除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外，国家允许外国投资者的出资、利润、资产处置所得、依法获得的补偿或赔偿等合法财产自由转入或转出。  **第一百一十五条** 【透明度】  国家依法及时公布与外国投资有关的法律法规和司法判决。  外国投资者、外国投资企业可依法参与法律法规制定程序，并发表评论意见。  **第一百一十六条** 【知识产权保护】  国家依法保护外国投资者、外国投资企业的知识产权。  **第一百一十七条** 【商协会】  外国投资者、外国投资企业可依法成立和自愿参加商会、协会，在法律法规和组织章程规定范围内开展相关活动，维护自身权益。  **第一百一十八条** 【纠纷解决】  外国投资者在中国境内投资和经营活动中产生纠纷的，可依照相关法律法规通过协商、调解、投诉、复议、仲裁或者诉讼等方式解决。  **第八章 投诉协调处理**  **第一百一十九条** 【投诉协调处理机制】  国家建立外国投资投诉协调处理机制，负责外国投资者、外国投资企业与行政机关之间投资争议的协调和处理。  **第一百二十条** 【投诉协调处理中心职责】  国际投资促进机构设立全国外国投资投诉协调处理中心，协调处理在全国范围内影响重大的外国投资投诉事项，履行以下职责：  （一）受理、转送外国投资投诉事项；  （二）与有关地方、部门协调处理外国投资投诉事项；  （三）督促、检查外国投资投诉事项处理方案的落实情况；  （四）根据外国投资投诉事项具体情况，向有关地方、部门提出完善政策和改进工作的建议；  （五）研究分析外国投资投诉情况，向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提交报告。  **第一百二十一条** 【请求协助】  根据外国投资投诉协调处理工作需要，全国外国投资投诉协调处理中心可要求有关地方、部门说明情况、提供材料并提供其他必要的协助。  **第一百二十二条** 【协调处理建议】  全国外国投资投诉协调处理中心根据本法第一百二十条【投诉协调处理中心职责】向有关地方、部门提出建议的，有关地方和部门应当予以处理并及时反馈处理情况。  **第一百二十三条** 【投诉协调处理机构】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根据需要设立外国投资投诉协调处理机构，在本辖区内受理并协调处理外国投资者、外国投资企业在投资争议中针对行政机关的投诉，并负责办理全国外国投资投诉协调处理中心转交的投诉事项。  **第一百二十四条** 【投诉协调处理原则】  外国投资投诉协调处理机构遵循公平、公正、合法的原则，依据本法及相关法律法规的规定协调处理投诉。  **第一百二十五条** 【如实投诉】  外国投资者、外国投资企业投诉时应如实反映情况，提供相应证据，并配合外国投资投诉协调处理机构开展工作。  **第九章 监督检查**  **第一百二十六条** 【监督检查】  外国投资主管部门应当加强对外国投资者、外国投资企业是否遵守本法的监督检查。  工商、税务、外汇、审计等其他行政主管部门依法履行监督检查职能。  **第一百二十七条** 【监督检查启动】  外国投资主管部门可依下列情形启动对外国投资者、外国投资企业的监督检查：  （一）定期抽样检查；  （二）根据举报进行检查；  （三）根据有关部门、司法机关的建议和反映的情况进行检查；   1. 其他依职权启动的检查。   **第一百二十八条** 【抽样检查】  抽样检查分为不定向抽样检查和定向抽样检查。  不定向抽样检查是指外国投资主管部门随机确定被检查人和被检查事项；定向抽样检查是指外国投资主管部门按照外国投资类型、经营规模、所属行业、地理区域等特定条件随机确定被检查人。  **第一百二十九条** 【举报】  对于涉嫌违反本法的行为，任何单位和个人均有权向外国投资主管部门举报。  举报人可要求外国投资主管部门予以保密。  **第一百三十条** 【对举报的核实】  举报人应当提供举报人的基本情况、被举报人的基本情况、涉嫌违反本法的相关事实和证据。  外国投资主管部门认为有必要的，应当进行核实。  **第一百三十一条** 【检查内容】  检查内容包括：  （一）是否在禁止实施目录列明的领域实施投资；  （二）是否未经许可在限制实施目录列明的领域实施投资；  （三）是否遵守准入许可决定所附加的条件；  （四）是否遵守国家安全审查决定所附加的限制性条件；  （五）是否履行信息报告义务；  （六）是否履行外国投资主管部门作出的行政处罚决定；  （七）是否存在危害国家安全和社会公共利益的行为；  （八）是否存在其他违反本法的情形。  **第一百三十二条** 【检查方式】  外国投资主管部门开展检查工作，可以采取网络监测、问卷调查、实地核查等方式。  **第一百三十三条** 【实地核查】  外国投资主管部门开展实地核查工作，检查人员不得少于二人，在检查中应当出示证件。检查人员应当填写实地核查记录表，如实记录核查情况，并由被检查企业或者人员签字或者盖章。无法取得签字或者盖章的，检查人员应当注明原因，必要时可邀请有关人员作为见证人。  **第一百三十四条** 【专业结论】  根据检查需要，外国投资主管部门可委托会计师事务所、税务师事务所、律师事务所等专业机构提供验资、审计、鉴证、咨询等专业服务。  外国投资主管部门可采用其他政府部门作出的检查、核查结果。  **第一百三十五条** 【配合检查】  检查时，外国投资主管部门可以依法查阅或者要求被检查人提供有关材料，被检查人应当如实提供。  **第一百三十六条** 【检查纪律】  外国投资主管部门实施检查不得妨碍被检查人正常的生产经营活动，不得接受被检查人提供的财物或服务，不得谋取其他非法利益。  **第一百三十七条** 【检查处理】  检查中发现被检查人可能存在违反本法行为的，外国投资主管部门可依法开展调查，经调查确认存在违法行为的，根据本法第十章【法律责任】的规定予以处罚。  **第一百三十八条** 【信息共享】  外国投资主管部门、其他有关行政主管部门应当实现外国投资管理的信息共享。  **第一百三十九条** 【地方检查】  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负责指导全国外国投资监督检查工作，根据需要开展或者组织地方外国投资主管部门开展检查工作。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外国投资主管部门负责组织或者开展本辖区的外国投资检查工作。  **第一百四十条** 【对地方检查的指导和监督】  上级外国投资主管部门应当加强对下级外国投资主管部门开展检查工作的指导和监督，及时纠正有关违法行为。  **第一百四十一条** 【诚信档案】  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建立外国投资诚信档案系统。  外国投资诚信档案系统记录的信息包括外国投资者、外国投资企业在设立登记、生产经营等活动中所形成的信息，以及外国投资主管部门和其他主管部门在监督检查中掌握的反映其诚信状况的信息。  外国投资诚信档案系统管理的具体办法，由国务院另行规定。  **第一百四十二条** 【诚信信息的公开】  外国投资主管部门可依法将有关外国投资者、外国投资企业的诚信信息予以公开。  社会公众可以申请查询外国投资者、外国投资企业的诚信信息。  依据前两款公开或者向其他人员披露的诚信信息不得含有外国投资者、外国投资企业的商业秘密、个人隐私，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外。  **第一百四十三条** 【诚信信息的修正】  外国投资者和外国投资企业可以查询外国投资诚信档案系统中的自身诚信信息，如认为有关信息记录不完整或者有错误的，可以提供相关证明材料并申请修正。经核查属实的，予以修正。  **第十章 法律责任**  **第一百四十四条** 【在禁止目录内投资】  外国投资者在禁止实施目录列明的领域投资的，投资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外国投资主管部门应责令停止实施投资、限期处分股权或其他资产，没收非法所得，并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或非法投资额10%以下的罚款。  **第一百四十五条** 【违反准入许可规定】  外国投资者未经许可在限制实施目录列明的领域投资的，投资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外国投资主管部门应责令停止投资、限期处分股权或其他资产，没收非法所得，并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或非法投资额10%以下的罚款。  外国投资者违反外国投资准入许可附加条件的，作出许可决定的外国投资主管部门应责令限期改正，并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或投资额5%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或情节严重的，外国投资主管部门可撤销准入许可。  **第一百四十六条** 【违反国家安全审查规定】  外国投资者有下列情形之一的，国务院外国投资主管部门应责令限期改正，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或投资额10%以下的罚款，并可依据本法第五十六条【再次进行安审】的规定再次提起国家安全审查：  （一）在国家安全审查过程中隐瞒有关情况，提供虚假材料或进行虚假陈述的；  （二）违反国家安全审查决定中所附限制性条件的。  **第一百四十七条** 【违反信息报告义务的行政法律责任】  外国投资者或外国投资企业违反本法规定，未能按期履行或逃避履行信息报告义务，或在进行信息报告时隐瞒真实情况、提供误导性或虚假信息的，投资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外国投资主管部门应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或情节严重的，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或投资额5%以下的罚款。  **第一百四十八条** 【违反信息报告义务的刑事法律责任】  外国投资者或外国投资企业违反本法规定，逃避履行信息报告义务，或在进行信息报告时隐瞒真实情况、提供误导性或虚假信息，情节特别严重的，对单位判处罚金，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责任人员，处一年以下有期徒刑或拘役。  **第一百四十九条** 【规避行为的法律责任】  外国投资者、外国投资企业以代持、信托、多层次再投资、租赁、承包、融资安排、协议控制、境外交易或其他任何方式规避本法规定，在禁止实施目录列明的领域投资、未经许可在限制实施目录列明的领域投资或违反本法规定的信息报告义务的，分别依照本法第一百四十四条【在禁止目录内投资】、第一百四十五条【违反准入许可规定】、第一百四十七条【违反信息报告义务的行政法律责任】或第一百四十八条【违反信息报告义务的刑事法律责任】进行处罚。  **第一百五十条** 【强制执行措施】  外国投资者、外国投资企业逾期不履行外国投资主管部门作出的行政处罚决定的，外国投资主管部门可以采取以下措施：  （一）到期不缴纳罚款的，每日按罚款数额的万分之五加处罚款；  （二）根据法律规定，将查封、扣押的财物拍卖或者将冻结的存款划拨抵缴罚款；   1. 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第一百五十一条** 【吊销证照和刑事法律责任】  外国投资者、外国投资企业违反本法规定，相关行业主管部门可依法吊销许可证件，工商行政管理部门可依法吊销外国投资企业的营业执照；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一百五十二条** 【管理部门工作人员的法律责任】  外国投资主管部门及其他相关管理部门工作人员在履行职责中有徇私舞弊、滥用职权或玩忽职守行为的，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十一章 附 则**  **第一百五十三条** 【生效前存续企业】  本法生效前依法存续的外国投资企业，除本章另有规定外，应适用本法的规定。  **第一百五十四条** 【生效前存续企业的变更】  本法生效前依法存续的外国投资企业，在本法生效后变更经营事项，属于本法规定应当申请准入许可情形的，应申请准入许可。  本法生效前依法存续的外国投资企业，在本法生效后新增加投资金额达到限制实施目录中规定的标准的，应当申请准入许可。  **第一百五十五条** 【原有条件下继续经营】  本法生效前依法存续的外国投资企业，可在原批准的经营范围、期限和其他条件下继续经营。  **第一百五十六条** 【经营期限】  本法生效后，投资各方可自行约定经营期限，但外国投资主管部门依据本法有关规定作出的以经营期限作为准入条件的除外。  本法公布后生效前经营期限届满，投资各方有意继续经营的，本法生效后可向工商行政管理机关办理变更手续。  投资各方自行约定或变更经营期限损害第三方权益的，第三方可依相关法律法规主张权利。  **第一百五十七条** 【变更企业组织形式和组织机构】  本法生效前依法存续的外国投资企业，在本法生效后三年内应按照《公司法》、《合伙企业法》、《个人独资企业法》等法律法规变更企业组织形式和组织机构，但企业既有经营期限在本法生效后三年内届满且拟延长经营期限的，应在企业既有经营期限内进行变更。  依前款规定完成变更之前，继续适用《中外合资经营企业法》、《外资企业法》、《中外合作经营企业法》中关于企业组织形式和组织机构的规定。  **第一百五十八条** 【协议控制的处理】  （参见“关于《中华人民共和国外国投资法（草案征求意见稿）》的说明”）  **第一百五十九条** 【取得外国国籍】  具有中国国籍的自然人取得外国国籍的，其在中国境内的投资不论发生于本法生效之前或之后，均属于外国投资，应当适用本法的相关规定，国务院另有规定的除外。  **第一百六十条** 【取得外国永久居留权】  具有中国国籍的自然人取得外国永久居留权，有关法律、行政法规对其在中国境内投资的待遇另有规定的，从其规定。  **第一百六十一条** 【取得中国永久居留权】  具有外国国籍的自然人取得中国永久居留权，有关法律、行政法规对其在中国境内投资的待遇另有规定的，从其规定。  **第一百六十二条** 【台湾同胞投资】  台湾同胞投资者在大陆投资的，参照适用本法，但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外。  对台湾同胞投资者在大陆投资的特别待遇，由国务院另行规定。  **第一百六十三条** 【港澳同胞和华侨投资】  港澳同胞投资者和华侨在内地投资的，参照适用本法，但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外。  对港澳同胞投资者和华侨在内地投资的特别待遇，由国务院另行规定。  **第一百六十四条** 【法律适用】  外国投资者签订的在中国境内履行的投资合同，适用中国法律。  **第一百六十五条** 【对应措施】  任何国家或者地区对中国投资者及其投资采取歧视性措施的，国家可以根据实际情况采取相应的措施。  **第一百六十六条** 【金融领域外国投资】  外国投资者投资银行、证券、保险等金融领域的，由相关金融主管部门依据有关法律、行政法规实施准入许可和监督检查。  **第一百六十七条** 【计价货币】  外国投资管理和统计采用人民币作为主要计价货币。  **第一百六十八条** 【是否包括本数】  本法所称“以上”、“以下”、“达到”包括本数，“超过”、“少于”、“不足”不包括本数。  **第一百六十就条** 【实施办法】  国务院可以依据本法制定实施办法。  **第一百七十条** 【生效】  本法自20 年 月 日起施行。《中外合资经营企业法》、《外资企业法》和《中外合作经营企业法》同时废止。 |